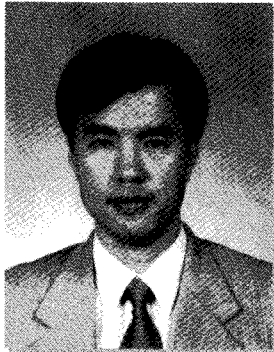


제도적 경쟁제한 요인에 대한 소고*



이 재 우
동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 서론

기업에게는 담합이나 카르텔(cartel)의 유혹은 항상 존재한다. 아담 스미스(Adam Smith)는 국부론에서 “상인들은 오락이나 기분전환을 위해서도 잘 모이지 않는다.

다. 하지만 일단 만나면 그들의 대화는 항상 소비자를 우롱할 술수나 가격상승의 결의 따위로 끝맺는다”고 주장하면서 기업가와 상인들이 공모 유혹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업간 카르텔이 성공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시장 조건이나 생산자 조건, 제도적 환경들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한다. 대개는 기업들이 담합이나 카르텔에 쉽게 안주할 수 있도록 시장구조와 제반조건들이 충족되는 경우가 드물다. 오히려 치열하게 경쟁에 몰입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더 보편적이다. 설사 일시적으로 성공했다 하더라도 카르텔은 내재적 붕괴 메카니즘에 의해 와해될 가능성이 높다. 기업간의 담합도 철저한 비용편익 분석을 통과하지 못하면

성사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직·간접으로 담합에 개입하고 있는 경우 카르텔은 상당한 생명력을 가지고 지속할 수 있다. 공익보호라는 명분하에 법과 제도로서 정부가 카르텔의 붕괴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직접적인 진입제한이 아니더라도 간접적인 경쟁제한 요소도 적지 않다. 또한 정부가 기업들이 수월하게 담합에 합의할 수 있도록 묵시적 담합의 초점(focal point)을 제공하는 경우도 많다. 각종 가이드라인, 지침, 표준가격 등 가격규제는 물론 규격화, 표준화정책 등 비가격규제 등이 바로 그것이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담합 형성과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면 처벌강화와 같은 카르텔 정책만으로는 성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정부가 경쟁제한적인 법령이나 규제를 철폐하지 못하면 독점규제정책의 효과는 크게 반감하게 된다. 미국 UCLA 대학의 템셋 교수는 기업간 카르텔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가장 강력한 요인은 정부”라고 주장한다. 이 글에서는 이런 관점에 입각하여 정부가 제공하는 담합의 원인들, 정부가 조장하는 제도적 담합요인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런 관점에서 카르텔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 이 글은 경제학연구 제47집, 제2호(1999. 6)에 실린 저자의 논문 『제도적 경쟁제한요인 분석: 공동행위 심결사례 분석을 중심으로』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힙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 대표적으로 가스, 석유, 전력, 수도 등 공익서비스 산업, 방송 및 통신, 각종 기간산업 등이 대표적으로 정부의 진입장벽과 법적인 보호아래 독점과 카르텔을 영위하고 있다. 정부가 산업정책에 따라 진입장벽을 설치한 경우 카르텔이 더 수월하게 이루어지며, 또한 기업들의 카르텔 형성 및 유지 비용도 크게 낮아져 공동행위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II. 제도적 담합조장 요인 분석 : 심결사례 분석

정부가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쟁제한 규정은 기존 사업자들의 독점적 지위를 보호해 줌으로써 공동행위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직접적인 진입제한 뿐만 아니라 상품의 가격 및 품질, 기준 등 영업과 관련한 규제들이 사실상 기업들의 의사합치를 도와주는 기능을 함으로써 이른바 “카르텔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1. 진입 및 사업규제

일반적으로 면허 등 인허가제도, 가격통제, 진입과 경쟁수단에 대한 제한, 교통규제, 관세, 농업 및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등이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대표적인 규제이다.

특히 진입규제는 경쟁업체의 참가를 막거나 진입비용을 높여 기존업자를 보호하여 시장의 경합성을 낮추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김재홍(1994)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 나라에서 전체산업(세세분류) 1,195개 가운데 43.6%인 533개 산업이 법률적인 진입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표적으로 가스, 석유, 전력, 수도 등 공익서비스 산업, 방송 및 통신, 각종 기간산업 등이 대표적으로 정부의 진입장벽과 법적인 보호아래 독점과 카르텔을 영위하고 있다.

정부가 법령을 통해서 경쟁을 제한하는 산업에서는 정부규제가 없을 때보다 담합이 쉬울 수 밖에 없다. 정부의 사업인허가를 받은 사업자들은 잠재적 진입 위협에 대한 불안이 없기 때문에 담합을 유지하는데 유리한 점이 많다. 정부가 산업정책에 따라 진입장벽을 설치한 경우 카르텔이 더 수월하게 이루어진다. 또한 기업들의 카르텔 형성 및 유지 비용도 크게 낮아져 공동행위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2. 사업자단체와 단체수의계약

정부의 법령을 근거로 사업자단체가 경쟁을 제한하는 사례가 많다. 일반적으로 인허가를 취득하면 사업자단체에 자동으로 가입되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사업자단체를 통해 단체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아 관련 단체는 회원업자에 대한 물량배정권까지 행사한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위임한 수요독점적(monopsony) 지위를 십분 발휘하여 경쟁을 제한하고 담합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중기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협회나 사업자단체 등이 법적으로 부여된 각종 위탁업무나 공동사업배정권을 무기로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방해하거나 공격적이고 경쟁적인 영업을 하는 업자를 제재하는 사례들이 많다.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인쇄공업협동조합은 조달청 등의 단체수의계약의 물량을 배정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임의적인 조합가입기준을 정하여 신규

업체의 가입을 거부하였다¹⁾.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은 중기법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로서 단체수의 계약사업에 있어 공공관서의 수요물량을 배정하는 권한을 이용하여 독점력을 행사하였다²⁾. 실제로 이들은 새로운 업체의 시장진입을 제한하고 신규업체에게 기존업체에 비해 물량배정에 불리하게 차별을 하는 등 경쟁을 제한하였다. 경기도 사진앨범협동조합은 가격인하를 시행하는 회원업소에게 제재를 가했는가 하면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의 경우는 관수아스콘 물량배정권을 이용하여 신규업체의 영업지역을 특정지역으로 한정하기도 하였다³⁾. 이밖에도 한국소방기구협동조합, 서울연식품공업협동조합, 전북연식품공업협동조합도 정부가 부여한 관급수요 배정권을 이용하여 사실상 기존업체끼리의 경쟁을 억제하고 신규업체의 진입을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제조치를 받았다.⁴⁾

관급수요의 배정권은 없지만 법정단체임을 활용하여 사실상 경쟁을 제한하거나 회원들에게 부당한 경품을 강요한 등의 위반행위를 하였다. 경기도건축사복지회는 건축사법에 의해 건축사사무소는 반드시 건축사등록을 받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이용하여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마친 자는 반드시 회원이 되도록 강제로 규정하였다. 특히 설계용역을 저가로 수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구성사업자가 도건축사회에 설계도서를 제출할 때 (합의된) 정상적인 설계보수액을 예치하지 않으면 설계도서의 접수를 거부하는 사례까지 있

**일반적으로 인허가를 취득하면
사업자단체에 자동으로 가입되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사업자단체를 통해 단체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아 관련 단체는
회원업자에 대한 물량배정권까지
행사한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위임한 수요독점적 지위를
실효 발휘하여 경쟁을 제한하고
담합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

다.⁵⁾ 경기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별 건축사복지회에서는 담합가격 이하로 거래했을 경우 그 차액만큼을 일정기간 은행에 예치토록 하여 담합가격 이하로 거래한 건축사들에게 불이익을 강요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 사례처럼 사업자 단체가 담합을 강제하기 위하여 담보(colleteral)를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경우는 한국소방기구공업협동조합의 담합 사건에서도 발견된다. 이 단체는 회원사들이 카르텔을 위반할 경우 보복할 수 있도록 백지어음을 카르텔에 예치토록 하였다.

이밖에도 법정단체임을 기화로 기존의 사업자들에게 경쟁제한적인 행위를 강요한 사례들도 많

1) 서울특별시 인쇄공업협동조합의 경쟁제한행위의 건(공정위 의결 93-225호)
 2)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건(공정위 의결 93-259호)
 3) 경기사진앨범협동조합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건(공정위 의결 93-212호),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건(공정위 의결 94-9호)
 4) 한국소방기구협동조합, 서울연식품공업협동조합, 전북연식품공업협동조합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건(각각 공정위 의결 94-300호, 공정위 의결 90-41호, 공정위 의결 90-8호)
 5) 경기도건축사복지회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건(공정위 의결 92-154호)

**법률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관례적으로 정부 부처가 개입하여
공동행위를 조장한 사례도 많다.
이처럼 행정지도나 권고,
비공식적인 개입 등을 통해
정부가 공동행위를 사실상
주도한 경우도 있다.**

다.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은 원단 단가의 인상에 따라 공동으로 골판지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비슷한 시기에 공동으로 인상하였으며,⁶⁾ 한국착화탄공업협동조합은 업체회의를 통해 착화탄(일명 번개탄)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부 업체의 조업을 중지시키고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이를 통해 생산과 판매를 조절하고 가격을 결정하도록 한 사실도 있다.⁷⁾

3. 비공식적인 행정지도에 의한 경쟁제한

법률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관례적으로 정부 부처가 개입하여 공동행위를 조장한 사례도 많다. 이처럼 행정지도나 권고, 비공식적인 개입 등을 통해 정부가 공동행위를 사실상 주도한 경우를 살펴보자.

행정지도의 대표적인 사례는 한국비철금속공업협동조합의 경쟁제한 사건⁸⁾이다. 당시 기존 업체들의 경쟁업체 시설 확장을 막기 위한 노력에 상공부가 정부 차원에서 적극 개입한 기록들이 심결집에 나타난다. 상공부가 기존 신동 생산업체를 대변하여 “경쟁자간의 판매지역을 제한하는 내용의 각서에 합의하도록 종용”하는 한편 “공문을 발송하여 풍산으로 하여금 각서이행을 하도록 촉구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편 사실도 있다.

또한 대한법무사협회 사건은 카르텔을 깬 법무사를 법원이 나서 처벌까지 함으로써 정부가 담합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등장한다. 이 사건에서 법무사들은 집단등기수임에 있어 경쟁을 하는 대신 순번으로 담당법무사를 지정하지는 내용의 공동행위 합의를 하였다. 문제는 이 합의를 어기고 단독으로 수임한 법무사를 관할법원에서 징계까지 한 사실이다. 담합을 깨고 경쟁을 촉진한 법무사를 공공기관이 처벌함으로써 정부는 적극적으로 경쟁을 제한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⁹⁾

4. 가격 규제

물가 안정 등 여러 목적으로 정부는 여러 유형의 각종 가격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승철·홍성중(1994)이 분석한 가격규제 실태에 따르면 총 1,047개 산업 가운데 전체의 27.5%인 288개 산업이 각종 가격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고시, 승인인가, 정기점검, 가격신고 등과 같은 직접규제가 전체의 94.4%를 차지하고 있다. 직접적 가격규제 이외에 자료관리, 행정지도, 수급조절 등 간접규제가 있는 경우도 전체의 59.7%나

6)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건(공정위 의결 92-55호)
 7) 한국착화탄공업협동조합의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제한행위 및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건(공정위 의결 92-146호)
 8) 한국비철금속공업협동조합연합회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건(공정위 의결 90-11호)
 9) 대한법무사협회의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제한행위에 대한 건(공정위 의결 94-263호)

차지하고 있다.

중요한 사실은 다양한 가격규제들이 사실상 기업간 담합을 조장하는 원천이 된다는 것이다. 각종 규제가격은 기업들이 가격덤핑을 회피하고 공동으로 가격을 설정하는 토대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적자라는 업자들의 주장과 반대로 규제가격은 통상적인 한계가격보다 높게 설정된다. 버스요금 허가제는 물가안정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사실상 업자들의 가격 공동인상을 정부가 추인해 준 결과를 낳았다.¹⁰⁾

실제로 가격규제가 사업자간 공동행위를 조장한 사례를 심결사례에서 살펴보자. (사)한국불링경영자협회 대전직할시지부와 충북불링경영자협회는¹¹⁾ 불링요금이 “관할구청의 신고수리요금임을 빙자하여” 사실상 관할구청의 최종 신고수리요금 이상으로 불링가격을 인상하였다.

(사)대한약사회 대구시지회는¹²⁾ 「의약품가격표시및관리기준」(보사부고시 제90-58호)하에서 69개 의약품이 “행정관리품목의 가격규제를 받는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의약도매상들이 약국에 공급하는 가격보다 20% 높게 보건소에 약품을 판매하도록 강권하는 등 실질적으로 타사업자의 사업활동이나 사업내용을 방해 또는 제한한 바 있다. 약사회의 이런 가격담합행위는 전국적으로 관행화되어 있으며 공정위 심결사례에도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유형이며, 가격담합의 근거로 한결같이 정부의 가격규제를 들고 있다.

유사한 사례는 제약회사의 경쟁제한행위에서도

가격규제나 가격지도를 통해서 정부가 업자들에게 단일의 가격 기준을 제시해 줌으로써, 공동행위의 형성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가격규제는 직접적으로 가격을 고시, 지정함으로써 기업들에게 경쟁의 기회를 차단하며, 가격의 최고 및 최저 한도를 제시함으로써 기업들의 담합가격 결정에 촉매기능을 하는 것이다.

발견된다. 녹십자 및 2개 제약회사는¹³⁾ 약품도매상들에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이른바 신고가격 이상으로 판매하도록 재판매가격을 유지하도록 강요하여 경쟁을 제한하였다.

지방정부나 정부기관이 가격지침을 업자들에게 제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대전에서는 치과기공소업주 및 치과의사회가¹⁴⁾ 치과 기공수가를 상호 합의하여 가이드 라인을 정하는 관례를 유지해 왔다. 이 가격합의 과정에서 “대전시에서 중재안을 제시하는” 등 지방정부가 카르텔 가격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해 온 경우도 있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부산광역시에서도 발견된다.

가격규제나 가격지도를 통해서 정부가 업자들

10) 가격규제를 받고 있었던 버스운송사업자들은 적자라고 항상 주장해 왔지만 실제로는 규제가격과 영업노선할당 시스템 등 카르텔구조하에서 사실상 상당한 흑자를 내고 있었다. 한국일보, 1996년 10월 31일자.

11) (사)한국불링경영자협회 대전직할시지부와 충북불링경영자협회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건(각각 공정위 의결 92-155호, 93-272호)

12) (사)대한약사회 대구시지회의 경쟁제한행위 및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제한행위에 대한 건(공정위 의결 93-221호)

13) 녹십자 및 동신제약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공정위 의결 95-312호)

14) 대전광역시 40개 치과기공소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대전치과의사회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건(공정위 의결 95-265호)

대개 정부는 브랜드별로, 규격별로, 기타 단위별로 표준화를 하며, 여기에 가격을 규제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기준설정이나 표준화는 카르텔 기업간에 담합 유지에 따른 감시비용을 줄이고 효과적으로 의사의 합치를 가능하게 한다. 이처럼 정부의 가격규제나 품질·표준 등 비가격규제는 사실상 기업들이 담합을 쉽게 할 수 있는 초점이 된다.

에게 단일의 가격 기준을 제시해 줌으로써, 공동행위의 형성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가격규제는 직접적으로 가격을 고시, 지정함으로써 기업들에게 경쟁의 기회를 차단한다. 또한 가격규제는 가격의 최고 및 최저 한도를 제시함으로써 사실상 이들 규제가격이 바로 담합의 초점(focal point) 역할을 하게 된다. 정부의 가격규제는 기업들의 담합가격 결정을 쉽게 해주는 촉매기능을 하는 것이다.

가격규제의 다른 폐해는 규제가 폐지된 이후에도 그 효과가 장기간 유지된다는 점이다. 가격규제가 폐지된 이후에도 관행상 가격조정과 담합관행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은행들은 반복적으로 수수료 및 이자율 결정에서 담합행위를 하고 있다. 은행들은 과거 “한국은행의 창구지도”에 따라 정해지던 수수료결정방식이 폐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수수료율을 담합으

로 결정하는 관행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주 고발되고 있다.¹⁵⁾ 철근업체는 담합행위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로 과거 “정부의 행정지도로 동일한 철근가격을 유지해 왔다”¹⁶⁾ 점을 주장하기도 했다.

5. 표준화 등 비가격규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동행위 심결례에는 정부가 표준화 정책을 시행하고, 이를 이용하여 담합을 공모한 사례도 나타난다. 정부가 소방차량류 규격을 표준화할 방침을 밝히자, 기업들은 표준화할 상품을 업체별로 할당하여 이른바 “업체별 품목별 생산전문화 계획”을 작성하고, 조달청 입찰시에 전문화 계획대로 입찰하되 피심인에게 배정된 품목은 다른 피심인들이 들러리로 높게 응찰하도록 한 사례이다.¹⁷⁾ 이는 표준화를 기회로 입찰가격을 공모한 경우에 해당한다. 대개 정부는 브랜드별로, 규격별로, 기타 단위별로 표준화를 하며, 여기에 가격을 규제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기준설정이나 표준화는 카르텔 기업간에 담합 유지에 따른 감시비용을 줄이고 효과적으로 의사의 합치를 가능하게 한다.

이처럼 정부의 가격규제나 품질·표준 등 비가격규제는 사실상 기업들이 담합을 쉽게 할 수 있는 초점(focal point)이 된다. 기업간 담합이나 공모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서로간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독점당국의 감시 때문에 명시적으로 카르텔을 의논하거나 협의하는 것이 불가능한 대신에 이러한 규제가 기업간의 의사전달의 훌륭한 신호로서 역할을 발휘하는 것이다.

정부의 가격고시나 행정지도, 표준가격이나 기

15) (주)제일은행 등 32개 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공정위 의결 93-27호)

16) 5개 철근제조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공정위 의결 95-100호)

17) 95년도 소방차량류 일반경쟁입찰 참가 8개 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건(공정거래위원회 의결 95-203호)

준들은 사실상 기업의 가격이나 상품특성을 단일화하는 경향이 많다. 이러한 경향은 곧바로 기업 간 공동행위의 성사를 위한 기준점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정부의 최고가격, 최저가격, 표준가격, 신고가격 등 각종 가격규제는 형태는 다르지만 결국 해당 사업자들에게는 공동으로 가격을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근거가 된다.

III. 결론 및 정책 시사점

결론적으로 정부개입은 담합의 중요한 원천 가운데 하나이다. 이는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카르텔을 조장하는 정부개입을 과감히 철폐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런 의미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가칭 카르텔일괄정리법)을 제정(1999. 2. 5), 시행하는 등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카르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실제 앞서 지적한 많은 사례들이 시정되는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담합을 야기하는 정부의 규제나 개입 사례들 가운데 산업정책이나 기타 규제 자체가 가지는 건전한 취지, 순기능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라 하더라도 담합을 조장하는 역기능과 규제의 순기능 효과를 면밀하게 비교할 필요가 있다. 대다수의 규제는 도입 초기의 건전한 취지는 상실되고, 담합을 조장하는 역기능만 온존하는 경우가 많다.

카르텔일괄정리법 시행 이후 카르텔을 조장하는 제도적 요인을 혁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를 바탕으로 지금보다 한층 강력하게 경쟁제한적인 법령의 철폐에 나설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경쟁제한적 법령의 철폐는 법정 사업자단체까지 포함하는 광

카르텔일괄정리법 시행 이후 카르텔을 조장하는 제도적 요인을 혁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다. 공정위는 지금보다 한층 강력하게 경쟁제한적인 법령의 철폐에 나설 필요가 있는데, 경쟁제한적 법령의 철폐는 법정 사업자단체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정부까지 확대하여야 하며, 법률 뿐만 아니라 무형의 정부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를 감시하는 역할도 해야 할 것이다.

의의 정부까지 확대하여야 한다. 법률 뿐만 아니라 무형의 정부개입(가령 담합을 조장하는 행정지도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를 감시하는 역할도 해야 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서면 타 부처의 적지 않은 반발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미국 등 선진국의 규제 개혁 과정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겪은 바 있다. 덴셋(Dernsetz) 교수는 미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반경쟁적규제에 대한 철폐작업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하면서 위원회가 만약 “기존의 사냥터”에 연연하면서 정부 규제를 제대로 공격하지 못하면 부처예산의 정당성조차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그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활동이 매우 사소하고 부적합한, 심지어는 위협한 분야까지 규제하는데 많은 인력과 자원을 낭비하면서 정작 주요한 “반경쟁적 규제와의 전쟁”에는 소홀히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지적은 우리 나라 공정거래위원회의 향후 활동과 우선 순위를 정하는데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공정**